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7월 17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

송 영 무

국방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29047호

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

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장성급(將星級) 장교 또는 1급 군무원”을 “2급 이상 군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7월 17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

김 부 겸

행정안전부
장 관

●대통령령 제29048호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3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2년간(소방경·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최근 3년간)”을 “2년간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제2호라목 중 “3년간”을 “2년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2년간”을 “1년간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4호 중 “소방위”를 “소방경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, 종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, 소방경·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기준을 종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였으나, 앞으로는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며,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소방장·지방소방장 및 소방교·지방소방교의 경우 기본경력 전 3년에서 기본경력 전 2년으로, 소방사·지방소방사의 경우 기본경력 전 2년에서 기본경력 전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,

소방청 소속기관 중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승진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8년 7월 17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산업통상
자원부장관 백운규

●대통령령 제29049호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제16호 중 “검사대상기기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제52조의2 중 “검사대상기기조종자”를 “검사대상기기관리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열사용기자재 중 시·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안전관리,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업무 성격에 보다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